

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분양기업을 위한 IBK기업은행 잔금대출 안내



대출대상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분양기업

※ 당행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

대출한도 분양가*의 **최대 90%** 이내

*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차감 후 기준
※ 임대사업자는 계약건별 RT비율 1.5이상 충족 필요

대출금리

(*24.1.30. 기준)

고정 최저연 **3.9841%** ~ 최고연 **5.4841%** **변동** 최저연 **4.403%** ~ 최고연 **5.903%**

- 산출근거 : 고정금리(중금채시가평가수익율 연 3.5931%) + 가산금리(연 1.891%) - 감면금리(0% ~ 1.5%)
변동금리(3개월 KORIBOR 연 3.66%) + 가산금리(연 2.243%) - 감면금리(0% ~ 1.5%)
- 산출기준 : 고정금리, 3년 만기, 중기업 신용등급A, 만기일시상환, 시설자금

- * 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, 담보비율 및 시장금리 변동, 감면금리 변동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
- * 이자납입 :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이자를 납입
- * 연체이자율 :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%를 더하여 적용(단,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%, 그 외 연 13%)
- * 감면금리는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, 기술력 보유, 제조 및 IT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적용
- * 당행 신용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

대출기간

상환방법

- **일시상환** : 3년(기간 연장 가능)
- **분할상환** : 최장 15년 (대출기간의 1/3범위 내 거치기간 포함), 원금균등분할 상환

부대비용

- **인지세** : 대출약정 시 납부세금(인지세법),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
- 대출금액별 차등납부

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비과세	7만원(고객부담 3만5천원)	15만원(고객부담 7만5천원)	35만원(고객부담 17만5천원)

- 근저당권 설정비용 전액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중 본인 부담분 제외)
- **중도상환해약금** : 상환금액 × **요율** × 잔존일수/대출기간 (단, 3년 초과 시 면제)

* 요율

	구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기업대출	부동산담보	1.4%	1.2%
	부동산담보 외	0.9%	0.8%

준비서류

법인	✓ 분양계약서 원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인감증명서(2통), 법인인감도장, 법인등기부등본, 대표자신분증, 주주명부, 최근3개년 결산재무제표(비교식)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(3개년),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년치)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24년도)
개인사업자	✓ 분양계약서 원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인감증명서(2통), 인감도장,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년치), 대표자신분증,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등본, 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)

※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, 기타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은행 및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IBK기업은행 | TEL 02-594-4815(내선 520, 530, 540) / FAX 0505-075-0233
교대역지점 | E-mail : ibktax233@ibk.co.kr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-0502호 (2024.01.30) 게시기한 : 2025.01.29 출금번호 : LZ00711
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·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·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·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(연체금 보유,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)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담보 물건,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,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

IBK기업은행